

직장 다니며 안 걸리고 사업/부업으로 통런하는 방법

보통 직장을 다니며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보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분들은 스마트스토어 같은 부업을 할지 말지부터 망설이시는데요.

특히 공무원분들이나 교직에 계시는 분들, 대기업 사원 분들의 경우에는,

겸업 금지조항이 있어서 더더욱이나 조심하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총 정리하여 4대보험에 대한 개념과 직장에서 걸릴 만한 요소들을 애초에 알아두고 그 싹을 제거하는 혹은 조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개념 정리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p>소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더보기</p> <p>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p> <p>안내 가입·신고, 보험료납부, 연금종류청구, 예상연금 모의계산 문의 상담전화 1355, 고객센터실, 지사찾기</p> |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써, 이 보험들은 근로자가 건강과 노후, 실업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각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시스템입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나중에 은퇴 후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비 등의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할 경우 잠시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무 중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받는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부상당하면 이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 때문에 직장에서 부업이나 추가소득으로 들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선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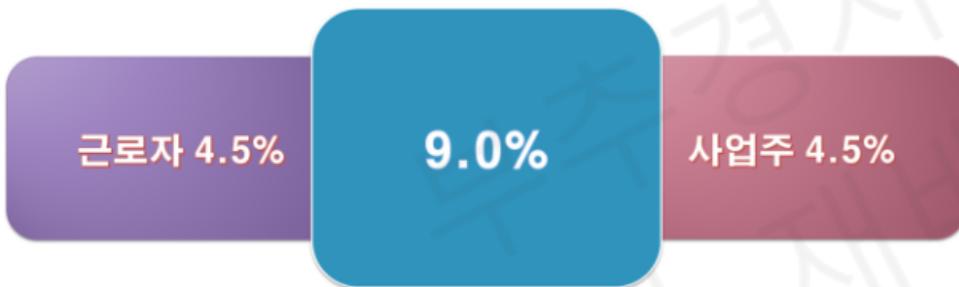
국민연금으로 회사에서 들킬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비율이 월 급여의 **9%**입니다.

그런데 **9%**를 전부 다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으로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각각 **4.5%**씩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최고 617만원**이 국민연금의 상한액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p>소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더보기</p> <p>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p> <p>안내 가입·신고, 보험료납부, 연금종류·청구, 예상연금 모의계산</p> <p>문의 상담전화 1355, 고객상담실, 지사찾기</p> | | |  |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
| <p>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7 기준)</p> | | | |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상한액이 뭐냐? ㅋㅋ
 쉽게 설명 해드릴게요.

ex)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회사에 또 취업을 해서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겸업이죠?)

두번째 회사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그럼 총 한달에 700만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죠?

이 금액이 **617만원을 넘게 되는게 바로 국민연금 상한액이 초과**되는 예시입니다.

이 상한액이 초과되면, 우리가 내야하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월급의 4.5%씩 납부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거기 **000**씨 직원으로 있으시죠? **000**씨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납부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정도로 알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의 월급 말고도 또 다른 수익원이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지, 다이소에 알바를 하는지,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를 하는지 등은 알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가지 사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 내용은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장을 또 다닐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을 “**직장 가입자**” 로 2중 가입한 경우겠죠?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뭐냐?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입니다.(1인사업자인 경우)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산정방식 | 보유재산기준 | 월급기준 |
| 보험료부담 | 본인부담 | 본인,회사 절반씩 |
| 변동성 | 재산변동에따라 | 총보수액기준 |



그러다보니 4대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한액이 초과되건 아니건 직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론

- 1인사업자로 수익 창출을 하면 국민연금으로는 직장에서 걸릴 가능성은 없다.
- 대신 1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뽑는순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상한액 617만원을 넘게 되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
- 그럼에도 회사에서 내가 어떤 부업이나 수익활동을 하는지까지는 모른다.
- 그냥 다른 수익원이 또 있구나 정도로만 알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직장에서 들킬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7.98%**를 납부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p>소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더보기</p> <p>자격 취득·가입, 상실·탈퇴,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보험료 납부·정산, 보험료조정, 보험급여, 의료급여 문의 상담전화 1577-1000, 고객센터, 지사찾기</p> | |  | |
|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이것도 똑같이 절반씩 사업주(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상한액이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 2025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현재 최고상한액이 **826만원**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상한액이 높죠?

급여와 부수입 소득이 합쳐서 **826만원**이 넘어야 상한액 초과로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월 **826만원**을 넘으려면 일단 **연봉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수입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상한액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특징 중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특징

-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2000만원은 솔직히 부수익으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년동안 벌 수 있는 금액 아니냐?

그럼 2000만원 이상 더 벌면 회사에서 걸리는거냐?

하는 질문들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No** 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만일 스마트스토어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더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보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 혹은 자택 주소**로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과 관련되어있는 통보는 절대로 회사로 가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으로 회사에서 들킬 수 있다?

3번째로 걱정을 하시는 요소는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실직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의 혜택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더보기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실업급여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 모의계산

문의 상담전화 1350, 이용문의, 고용센터 찾기



| 보험료율 |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을 통해서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1인사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고용보험은 1인사업자인 경우 가입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회사에서 들킬 수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더보기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안내 산재보험료 계산, 보험료 납부, 산재보상 절차, 미가입 신고센터

문의 상담전화 1588-0075, 사이버고객상담, 지사찾기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
| 1 광업 | 5.76%~18.56% | 6 임업 | 5.86% |
| 2 제조업 | 0.66%~2.46% | 7 어업 | 2.76% |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0.76% | 8 농업 | 2.06% |
| 4 건설업 | 3.56% | 9 기타의 사업 | 0.66%~0.96% |
| 5 운수창고통신업 | 0.86%~1.86% | 10 금융 및 보험업 | 0.56% |

보험료를 전체보기

매년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말 고시)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위에 보시면 이 산재보험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뽑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총 정리

가장 문제가 되는 4대보험에서의 요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하고 회사에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인데요.

어느정도 수익 창출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알 수가 없으며,

수익이 일정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건보료가 올라 통보**가 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직장이 아닌 자택(집이나 사업장 주소지)으로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인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직원을 뽑을 정도로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월급을 줄 여유가 있는거죠?)

그때에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할 이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그때 퇴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며 여유롭게 회사를 다니실수도 있겠죠.

말그대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

제가 많은 수강생분들을 가르치면서 대부분 이런 4대보험으로 직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수강생분들 중에 직장에서 걸려서 문제가 되는 때는 보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일의 가장 근본 원인은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세금이나 보험적인 요소때문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스토어 한다고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수익을 얼마 추가로 벌었다고 자랑해서 시샘을 받거나

직장 컴퓨터를 실수로 켜놓아서 옆 직원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바쁜 업무가 아님에도 딱 봐도 티나게 스토어나 주문처리 등 다른 업무를 하여 주변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티가 나거나 등

이렇게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경업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업이나 스토어,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를 잘 살피고 조심히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요소들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곳에서 우리의 비밀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온라인 사업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사항이나 다양한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싶으시다면,

아래 저의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추경자 구매대행/리셀 단톡 1번방

▶<https://open.kakao.com/o/gaOZ6hZf> (비번:0101)

부추경자 구매대행/리셀 단톡 2번방

▶<https://open.kakao.com/o/gC4KqAgg> (비번:0317)